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번호	1810

제안년월일 : 2024년 4월 29일
제 안 자 : 기획경제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24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72호)을 제323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4.4.29.)에 상정해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민참여예산위원 위촉자격 완화, 운영기구 개편 등의 사항을 반영하면서, 위촉 후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미수료한 위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수단을 추가하고 시민참여예산사업 심사 기준 중 사회적 약자 대상 사업을 우선시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참여예산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대안을 제안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시민참여예산위원 자격요건 완화(안 제13조)

○ 위촉 후 교육을 미수료한 경우의 적절한 조치 수단 마련(안 제14조제4호)

○ 시민참여예산 운영기구 개편

-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7조 및 제18조)
- 운영실적이 저조한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지원협의회 등을 폐지

○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심사기준 개정(안 제20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 예산의”를 “서울특별시 예산의”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서울시와”를 “시와”로 한다.

제4조 중 “시민참여”를 “있어서 시민참여”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시민들”을 “시민”으로 한다.

제6조 중 “시민의견”을 “있어서 시민의견”으로 한다.

제7조 중 “시의 예산 편성 등”을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 누리집”으로 한다.

제9조 중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을 “예산과정”으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할”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로 한다.

제10조 중 “시의 예산 편성 등”을 “예산과정”으로, “자는”을 “시민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 누리집”으로 한다.

제12조 중 “수행하여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을 “수행하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을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지역회의, 민관예산협의회”를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로, “대한 최종”을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방식에 의해”를 “공개모집절차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촉 이후 한달 이내에 제13조제6항에 따른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의 제목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장 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를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

항 중 “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선출하고, 임기 동안”을 “위원회를 대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는 제18조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를 겸임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회하고”를 “개의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총회”를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로, “시민”을 “위원이 아닌 시민”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람이”를 “시민 및 전문가가”로, “경우 절차에 따라”를 “경우”로, “하며, 그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견은”을 “의견을”로 한다.

① 위원장은 예산편성안의 최종적인 심의·조정을 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총회”라 한다)를 소집한다.

제25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해당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18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의 간

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기능분과의 자율적 운영

제20조(종전의 제22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신규”를 “신규편성”으로, “사업”을 “사업이나 행정운영경비 위주의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피할”을 “회피할”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9조) 중 “규정을”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로, “홈페이지를”을 “누리집을”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0조)제1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4장(제23조 및 제24조)을 삭제하고,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민에게”를 “시민 또는 단체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급하는 포상금 등의 종류·액수는”을 “포상금 등을 지급할 경우”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를 “포상금 등의 종류 및 액수를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 전문가 등이 위원회등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경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앞에 “제5장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를 삭제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지원 등

제28조 앞에 “제6장 지원 등”을 삭제한다.

제25조(종전의 제29조) 중 “조례시행”을 “조례 시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서울특별시 예산의 ---------- ---------- ----------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는 시민에서 제외한다.	② ---------- 시와 -- ---------- ---------- ---------- ----------.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시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	제4조(법령준수 의무) --------- ---------- ---------- ---------- ---------- ----- 있어서 시민참여 ----- ---------- ---------- ----------

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시민---------- ----------.
제6조(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 과정에 시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시민참여예산의 범위) ------ 있어서 시민의견 ---------- ----------.
제7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 편성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시민의 권리) ---------- ---------- 예산과정---------- ----------.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① ---------- ---------- ---------- ---------- 시 누리집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견수렴 절차)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사업공모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절차) ----- 예산과정---------- ---------- -------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
제10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 편성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	제10조(의견 제출) 예산과정---- ----------

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시민은 ----------. ----------.
제11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시민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 공개) ---------- ---------- 시 누리집 ---------- ----------.
제12조(정보제공) 시장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시민참여방법,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제공) ---------- ---------- 수행하여 ---------- ----------.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 략) 2.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한 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 3. ~ 5. (생 략) ② (생 략) ③ 제2항의 위원은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13조(시민참여위원회 구성) ① ----------. 1. (현행과 같음) 2. ----------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 대한 --------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총수의 5분의 4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④ ----------.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 방식에 의해 선정된 사람	1. ----------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의회 및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제14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위촉 이후 한달 이내에 제13조제6항에 따른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5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

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
② 위원장은 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선출하고, 임기 동안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 위원회를 대표하고, ----------.
<신 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는 제18조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를 겸임한다.
제16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원칙)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실·본부·국별 민관예산협회의회 및 기능분과별 자율적 운영 유도	<삭 제>
<신 설>	5.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기능분과의 자율적 운영

4.·5. (생 략)	3.·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7조(총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안을 최종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된 예산편성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 ① 위원장은 예산편성안의 최종적인 심의·조정을 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총회”라 한다)를 소집한다.
②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개의하고----------.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과정에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시민 및 전문가의 참여 절차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 위원이 아닌 시민 ----------. <후단 삭제>
④ 위원이 아닌 사람이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그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 시민 및 전문가가 ---------- 경우 ---------- 한다.
⑤ 시장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 의견은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한다.	⑤ ---------- 의견을 ----------.
제18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삭 제>

는 때에는 위원회 및 기능분과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기능분과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9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 누리집을 ----------.
제20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제22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 15일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22조(민관예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과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	제1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실·본부·국별로 민관예산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민관협의회의 명칭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분야별 특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민관협의회의 회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시민이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민관협의회의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민관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민관협의회의 회장은 민관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분과를 둘 수 있다. ⑥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를 둔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2(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	제20조(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 심사기준) ----------

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삭 제>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신규편성 ----------사업이나 행정운영경비 위주의 사업------.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그 밖에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4. ----------회피할 ----------.
제4장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삭 제>
제23조(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설치) 시장은 시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각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각 자치구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협치회의를 포함한다)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본다.	<삭 제>
제24조(기능) 지역회의는 각 자치구의 시민제안사업을 심의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8월 초까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삭 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삭 제>
제25조(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1.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시민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등에 대한 활동 지원 3. 지역회의, 위원회, 협의회 운영 등 시민참여예산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4. 시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지원	제1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시의회 의원, 예산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위원회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 50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담당 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해당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협의회 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협의회 부회장은 협의회 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⑧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협의회 회장은 시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협의회를 개	<삭 제>

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활동 3. 지역회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4.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5. 시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6. 그 밖의 협의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삭 제>
제6장 지원 등	<삭 제>
<신 설>	제4장 지원 등
제2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생 략) ② 시장은 위원회, 협의회, 민관협의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와 협의회, 민관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 전문가 등이 위원회등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경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과정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업 및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 시민 또는 단체에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등의 종류·액수는 우수 사업 및 의견을 선정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⑤ ---------- 포상금 등을 지급할 경우 ---------- 포상금 등의 종류 및 액수를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 조례 시행----------.